

중재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박종삼**
Jong-Sam Park

〈목 차〉

- I. 서 론
- II. 중재계약의 유형 및 요건
- III. 중재계약의 효력
- IV. 결 론

주제어 : 중재계약, 중재계약효력, ADR

* 본 논문은 2009년 10월 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이후 수정, 보완된 논문임을 밝혀둔다. 무엇보다 본 논문의 완성을 위해 의미 있고 유익한 지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학술대회 토론자와 논문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I. 서 론

국제거래에서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당사자자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ADR)으로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방법이 있다. 여기서 중재는 기타 분쟁해결방법과 달리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상거래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영미사회에서는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재계약 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양자는 동일한 개념의 중재용어로 부르고 있다.¹⁾ 이처럼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고 이러한 합의에 당사자가 구속된다는 일반적인 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다.

따라서 중재계약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존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를 말한다.²⁾

중재계약이 당사자간에 유효하고 적법성을 지닌 계약으로 성립되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직소금지, 방소항변, 최종해결 등의 원칙의 효과가 발생되어 타방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하고 있다. 다만 중재계약이 부존재, 무효, 실효하였거나,³⁾ 이행불능인 경우에는⁴⁾ 법원에 직접 소송이 허용 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므로 유효한 중재합의 여부가 중재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⁵⁾ 아울러 국제거래의 분쟁을 다루는 중재합의를 둘러싼 상이한 이해와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상거래에서는 중재계약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1) 강이수, 박종삼,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2004.8, pp.392-393;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 해의」, 대한상사중재원, 1991.12, p.54.

2) 한국 중재법 제3조 제2항.

3) 중재계약의 실효라 함은 본래 유효하게 체결된 중재계약이 후일에 어떤 사유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당초부터 중재계약이 무효인 경우(예컨대 미풍양속 등 건전한 사회질서 위반) 또는 중재계약이 부존재인 경우와 구별된다. 중재계약은 재산적 계약도 아니고 신분적 계약도 아닌 오직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중재계약도 하나의 계약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계약과 관련하여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될 수도 있다. (이순우, “중재계약의 소고”,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2003.4, p.177.)

4) 중재계약의 존부 또는 유효 무효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당해 중재판정부가 이를 다룰 수 있다. 중재계약의 효력에 관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은 ①의사표시의 하자과 의사능력의 흠결 ②중재에 부당한 분쟁의 중재적 합성 ③중재계약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의 적격성 ④중재계약의 방식 ⑤이들에 관한 하자의 치유가능성 ⑥주된 계약의 무효가 중재계약의 무효를 가져오는 요인 등이다. 그런데 영미법계 학자 중에는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즉,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tract)이라 함은, ① 주된 계약이 발효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② 주된 계약의 체결이 당초부터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분쟁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한국 중재법 제9조 제1항.

한편,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는 광영실의 “중재계약의 범위와 준거법의 충돌문제, 경영법무,” 1998.에서는 중재계약의 일반적인 범위와 해당 준거법과의 충돌문제 등에 대하여 이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김명엽은 “중재계약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학회지 제11권, 한국중재학회, 2001에서는 중재계약의 법적성질의 3가지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재계약의 효력을 적극적, 소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이를 제시하고 있고, 김연호는 “중재계약의 효력 범위”,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2002에서는 중재계약의 효력을 건설중재계약을 중심으로 한미간의 관련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고 있고, 박종삼, 김영락은 “중재계약에 관한 판례분석”,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9에서 중재계약의 법적 성질과 이에 관련된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중재계약을 다루고 있고, 서정일은 “건설중재에 있어서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2와 장영환,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분석”,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09.10에서는 상기 김연호 논문에서와 같이 건설중재계약에서 당사자간 선택한 중재합의 즉 중재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이에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중재계약을 검토하고 있고, 손경한, “중재계약에 관한 일반적 고찰”,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1, 이순우, “중재계약의 소고”,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2003, 이병용, “중재계약과 관련하여”,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1. 정동윤, “중재계약의 항변”,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2002 등의 논문은 일반적인 중재계약의 개요와 한국의 법원, UNCITRAL 중재규칙, 영국국제중재재판소 등의 판례를 중심으로 중재합의의 요건, 형식, 효력 등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요컨대, 상기의 논문들은 대부분 중재계약의 일반적 개요와 법적성질, 건설중재계약 등에 관련된 중재합의의 유효성들에 대하여 사례와 판례 등을 중심으로 중재계약의 효력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이를 고찰·검토하고 있는 논문 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02년 1월26일에 개정된 한국 중재법을(중재규칙은 2008년 11월13일 대법원승인) 중심으로 중재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중재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중재계약의 유형, 요건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중재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시기, 범위 등에 관하여 각국들의 규정 등을 분석·검토하여 본고의 초점이 되는 중재계약의 법적 효력의 내용 등을 중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찾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기반을 두고 체결된 중재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 본고와 관련된 선행연구 등을 고찰·분석하고 또한, 중재계약의 일반적인 개념 등을 살펴보고 이어, 중재계약이 당사자간에 미치는 효력의 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중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본고의 목적을 두고 있다.

II. 중재계약의 유형 및 요건

1. 중재계약의 유형⁶⁾

중재계약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그 하나는 사후 중재합의인 중재부탁계약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 중재합의인 중재조항에 관한 유형이다.

1) 중재부탁계약(Submission to Arbitration Agreement)

중재부탁계약이라고 함은 당사자간에 현존하는 분쟁 즉 이미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주된 계약과 별도로 중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재인에게 제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2)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중재조항의 유형은 주로 당사자가 체결하는 일반계약서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취지의 중재조항을 미리 삽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유형으로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나 별개의 계약으로도 체결 할 수도 있다.⁷⁾ 또한 한국 중재법 제17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 본 계약과의 관계에서는 중재조항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이는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6조 제1항 조문에 따른 것이다.⁸⁾ 아울러 이 유형은 당사자간에 발생할 장래의 분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지만⁹⁾ 현존하는 분쟁도 포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고,¹⁰⁾ 국제적인 중재계약에 관해서는 표준중재조항을 활용하여 중재계약의 효력을 증진 시키고 있다.¹¹⁾

6) 이하, 이강빈,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5권제2호, 2005.8, pp.198-199; 손경환, “중재계약에 관한 일반적 고찰”,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1.12, pp.265-267.

7) 이순우, 앞의 논문, pp.166-167; 목영준, 「상사중재론」, 박영사, 2000, p.34; 서정일, “건설중재에 있어서 선택적 중재합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2, p.166.

8) 목영준,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 2007, p.109; 장영환,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분석”,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09.10, pp.13-14.

9) 상사분쟁에 한하여 장래의 분쟁에 관한 중재합의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도미니카 등 중미국가와 포르투갈, 마다가스카 등; 倉田寛吉, 仲裁手續の解説, 1983, 20面 참조.)

10) 중재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현존하는 분쟁에 관한 합의를 유효로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볼리비아, 쿠바, 벨기에 등; 이순우, 앞의 논문, pp.166-167.)

11) 대한상사중재원이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일반적으로 중재계약에서는 중재부탁계약의 형식을 취한다. 또한 중재조항 형식의 유무에는 법률적 효력의 차이는 없지만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서 집행판결의 재판절차에 있어서 차이를 두기도 한다.

2. 중재계약의 요건

중재계약은 일정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는 합의이다. 그러므로 중재계약에서 합의가 없는 계약은 중재계약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계약이 중재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라든가 법률상 중재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¹²⁾ 즉, ①당사자간의 의사표시 및 능력에 관한 요건, ②중재계약의 체결권한에 관한 요건, ③중재계약의 형식에 관한 요건, ④중재지, 중재인, 중재절차에 관한 요건 등을 들 수 있다.

1)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및 능력에 관한 요건

중재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중재계약의 성립은 중재인으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민법의 규정에는 사기, 강요 또는 착오로 인하여 성립한 중재계약은 취소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경솔 또는 공박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중재계약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중재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의와 의사능력이 있는 자와 행위능력이 있는 자에 의한 중재계약만이 중재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금치산자가 행한 중재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¹³⁾

2) 중재계약의 체결권한에 관한 요건

중재계약의 체결권한으로서 분쟁물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

connection with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또한 각국의 중재기관은 각자 『표준중재조항』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상업회의소(ICC) 부설 국제상사중재 법원(ICA)의 표준중재조항은 ① 준거법(governinglaw), ② 중재인의 수(number of arbitrators), ③ 중재장소(place of arbitration) 등 3가지 사항을 명료하게 서면(in writing)에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뉴욕협약에서는 단순히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정한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제2조 제1항), UNCITRAL 중재규칙에도 “중재에 부탁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동규칙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중재계약이 중재조항 합의에 의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쟁발생시 중재를 시작하기 전 중재부탁의 입법례 형식을 요하는 국가도 있다. 또한 입법례에 따라서는 중재조항의 형식에 의한 중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현실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재에 부치기 위해서는 다시 중재부탁의 형식절차를 밟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이순우, 앞의 논문, pp.166-167.)

12) 小山 昇, 『仲裁法』, 有斐閣, 1983, 38面.

13) 한국 민사소송법 제51조.

가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수권된 범위내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분쟁물의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은 중재계약의 체결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분쟁의 주당사자라도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고,¹⁴⁾ 주된 채무자(principal debtor)가 행한 중재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surety)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¹⁵⁾

3) 중재계약의 형식에 관한 요건

중재계약은 계약으로 성립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인에게 판정권 부여,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에 기명·날인, 계약서에 중재조항의 기재,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 등에도 중재합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¹⁶⁾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중재계약은 무효이지만, 양당사자의 유보 없이 중재절차에서 불만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회복된다.¹⁷⁾

4) 중재지, 중재인, 중재절차에 관한 요건

국내중재법에 의하여 중재를 진행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요건이 반드시 중재계약에 명시될 필요가 없으나, 국제중재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만 중재가 개시 된다. 예컨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중재지 등에 관하여 새로이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할지국의 중재법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본다.

한편 중재지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는 적어도 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인 피고지주의에 따라서 타방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서 그 절차법에 따라 중재마저도 불가능 됨으로 중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4) 손경한, 앞의 논문, pp.275-276; 한국 파산법 제15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15) Russell, F., 『The Law of Arbitration』, Anthony Walton, 1979, pp.35-37.

16) 한국 중재법, 제8조 제2항.

17) 한국 중재법, 제8조 제3항2호; 정동윤, “중재계약의 항변”,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2002.12, pp.218-219.

Ⅲ. 중재계약의 효력

1. 중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및 존속기간

먼저, 중재절차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¹⁸⁾ 우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¹⁹⁾ 이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중재 요청서가 수령된 일자에 개시되고²⁰⁾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²¹⁾ 그러나 서면을 직접 교부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서신연락장소에 정당하게 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²²⁾ 즉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²³⁾ 또한 중재계약이 예외적으로 서면에 의하지 않고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구두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에 중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두로 체결된 중재계약에 관해서 사후에 서면이 작성되어 그 서면에 작성일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계약은 선면으로 할 것으로 요구하는 모든 나라와 뉴욕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⁴⁾

한편, 중재계약의 효력의 존속기간도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²⁵⁾ 우선, 합의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정해졌을 때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중재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만약 중재절차 진행 중에 합의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가 그 약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특약을 해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당사자가 중재계약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해서도 다시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한편, 중재계약의 효력의 존속기간이 당사자간에 정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중재계약적 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⁶⁾ 왜냐하면, 중재계약

18) 박중삼, 김영락, “중재계약에 관한 판례분석”,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9.12, pp.226-227 ; 이순우, “상사 중재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10, pp.113-115.

19) 한국 중재법 제21조.

20) 한국 중재법, 제22조.

21) 한국 중재법 제21조.

22) 한국 민사소송법 제1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절차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명령적, 공중적 행위이다.

23) 한국 민법(제111조)과 한국 중재법(제22조)도 도달(수령)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기도 한다(한국 민법 제15조, 131조, 455조, 513조, 일본 민법 제97조.)

24) 박중삼, 김영락, 앞의 논문, p.226.

25) 중재계약의 효력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중재조항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은 매도인이 30일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다’라고 규정된 경우 매수인의 중재신청이 배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 대법원의 의견은 소극적이다. 대법원 판례(1990. 11. 13. 선고, 88다카7795 판결, 이순우, 앞의 논총, pp.175-176; 小山 昇, 앞의 논문, 78면.)

은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존하는 분쟁 및 장래에 발생할 모든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합의이므로 실제로 법률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중재계약의 효력 범위

중재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중재조항의 문언에 따라 정해진다. 중재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에 규정된 관계를 당사자들이 지속한 경우에 중재계약의 효력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조항의 구속력을 가지는가 하는 점도 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그러므로 한국 중재법에서도 분명히 중재계약은 본 계약과의 분리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계약의 이행이나 종료여부와는 상관없이 중재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인적인 범위와 물적인 범위로 나누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적인 범위

중재계약은 계약당사자를 구속한다. 예컨대, 타인을 위하여 중재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는 자, 계약당사자의 사망의 경우에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는가가 문제인데 사망자의 권리의무와 함께 중재계약상의 지위도 승계한다고 본다.²⁸⁾ 또한 당사자 간에 있어서 사망의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일반법(common law)의 판례에 의하면 중재계약은 중재판정 전에는 당사자에 의하여 언제든지 중재합의를 철회할 수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사망하기 전에 행하여진 철회반대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철회된 것으로 본다.²⁹⁾

예컨대, 파산관리인이 맺은 중재계약의 효력의 범위는 그 타인에게 미치고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도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미친다. 또한 당사자의 특정승계인에

26) 중재판정이 부여되면 집행판결에서 승소여부에 불구하고 기판력이 발생하여 중재절차는 종료하고 중재계약은 실효한다. 따라서 중재계약이 실효된 후에 중재판정이 취소되어도 중재계약 중에 이에 관한 특약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중재계약의 효력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는 독일과 일본에서 통설로 수용되고 있다 (松浦聲, 青山善允 編, 現代仲裁法の論點, 1998, 183면 참조.)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4조 제4항의 입장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7) Russell, op. cit., pp.99-100.

28) 小山 昇, 앞의 논문, 485면. 다만, 한국 중재법 제30조에서는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9) Domke, Martin, 「Commercial Arbitration」, Gabriel M. Wilner, 1984, pp.113-114; 미국판례: Estate of Hollinger v. Levine, 93 Misc 2d 926, 403 NYS 2d 857(1978). 이 판례에 의하면 이혼합의서에 있는 중재조항에 의하여 별거수당의 감액에 관한 중재가 진행 중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부인은 동 중재조항에 의하여 다시 별거수당감액에 관한 중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이순우, 앞의 학위논문, pp.116-118.)

게 미치는지 여부는 중재계약 내용의 해석에 의한다. 또한 특정의 조합원 상호간에 중재계약을 맺고 조합의 중재기관의 관할로 합의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한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중재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용선계약중의 선박을 매수하여 선박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선박소유자가 맺는 중재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또한 제3자의 권리의무가 중재계약의 분쟁물의 존부에 걸려 있을 경우, 예컨대 보증인, 연대채무자에게 중재계약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³⁰⁾

2) 물적인 범위

중재계약의 물적인 효력 범위는 중재계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컨대, 어떤 상품의 일수판매계약에서 야기되는 분쟁을 중재에 붙이기로 하는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약의 기초가 된 개개의 거래에 관한 거래뿐만 아니라 기본계약 그 자체의 해제가 유효한 가 아닌가의 거래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될 경우가 있다.³¹⁾ 따라서 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계약의 효력 범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²⁾

첫째, 독일의 경우에는 중재계약에서 개괄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주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분쟁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청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이 주된 계약이 청산관계에 관한 분쟁도 중재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에는 건물의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중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료 내지 대금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에 기초한 가옥명도청구에 관하여도 “본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개괄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계약내용의 해석 내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내용의 수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관계의 종료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도 중재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형성되었다.³³⁾

30) 이병용, “중재계약과 관련하여”,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1.12, p.258.

31) 이병용, 앞의 논문, p.258.

32) 이하, 김연호, “중재계약의 효력 범위”,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2002.12, pp.289-290.

33) 이후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견해가 반복되었는데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김연호, 앞의 논문, pp.285-290.)

- ① 매매계약에 관하여 체결된 중재계약은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의하여 계약해제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내지 약정금반환청구도 그 대상으로 한다.
- ② 선박용선계약에 관하여 체결된 중재계약은 용선계약이 성립하였는가 아닌가, 계약불이행이 있었는가 아닌가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정당한가 아닌가 등의 분쟁도 중재인의 판단대상으로 한다.
- ③ 선하증권에 함체된 용선계약서상에 본 용선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취지의 중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 중 발생한 운송품의 손상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때에도 용선계약서 소정의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 ④ 화재보험업의 총대리점계약에 따른 중재계약에 관하여는 총대리점계약의 해제는 해제전의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발생한 권리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도 중재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⑤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중재계약은 그 성질상 도급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도 중재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 ⑥ 특히 건설도급계약 중에 중재계약이 존재하고 공사대금지불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청구에 대하여

셋째, 미국의 경우에는 중재계약이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의 산물이므로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중재의 경우 이에 따를 의무가 없는 반면 개괄적인 중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재인의 판단에 의하여 중재계약이 효력범위가 결정된다고 설명된다. 판례도 중재계약 효력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인의 판단을 존중하고 유효하게 인정하는 리버럴(Liberal)한 태도를 취하면서³⁴⁾ 중재계약의 효력범위도 협의적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³⁵⁾

3. 중재계약의 효력 내용

중재합의도 일종의 계약인 것이므로, 그 효력의 내용에 관해서는 중재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일반을 규제하는 법 즉, 민법, 상법, 국제사법 등의 해당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준용함으로써 이를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재계약의 효력 내용에는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 중에는 중재계약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하는 약속인데 이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것과 중재판정에 복종하겠다는 필수적 약속과, 중재기관의 선정, 중재절차, 중재기준 등에 관한 임의적 약속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 관점 하에서 중재계약 효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소금지 효력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합의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는 통상범위에서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다만,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때를 제외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직소금지의 효력이라고 볼 수 있다.³⁶⁾ 이에 대한 각국의 제반 법규정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³⁷⁾

즉, 영국중재법(1950) 제4조에서도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부탁의 합의를 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절차의 정지를(to stay the [legal] proceedings) 해당판정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판정소 또는 그 재판소의 재판관은 이를 만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if satisfied) ...소송절차 정지를 명하여야한다(may make an order staying the proceedings)』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중재법(1925년 그 후 개정) 제3조에서도, 위와

발주자가 원인관계 항변으로서 공사의 하자를 주장한 경우 하자를 유무, 정도의 확정이 없이는 중재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시공자의 공사대금 지불청구와 발주자의 지불거절사유 정당성 유무가 모두 일체로서 중재판단의 범위에 속한다고 한다.

34) Lawson Fabrics, Inc. v. Akzona Inc., 355 F. Supp. 1146(D. N. T. 1973.)

35) Schattner v. Girard, Inc., 668 F. 2d 1366(D.C. Cir. 1981.)

36) 한국 중재법 제9조.

37) 이하, 김성수,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제도 해설」, 대한상사중재원, 1994.12, p.76-77.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Domke교수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³⁸⁾ 한편, 뉴욕협약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본건에서 말하는 합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 제소되었을 경우에는 채약국의 재판소는 그 합의가 무효이거나, 실효하였거나, 또는, 이행불능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에 부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력은 소극적 효력으로서 일부국가에서 장래분쟁에 관한 중재합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중재합의를 체결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법원은 최초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재판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중재합의에 의하여 재판권이 제한 된다고 한다.³⁹⁾ 그러나 이 직소금지의 효력은 모든 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발현형태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르다.⁴⁰⁾

2) 방소항변의 효력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중재를 알면서도 항변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소를 제기하여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항소권이 소멸된다. 이에 법원은 항변이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를 부정하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에 중재계약의 존재를 이유로 하여 하는 항변을 방소항변이라고 하고, 중재계약의 존재를 항소하지 않으면 분쟁물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본다.⁴¹⁾

아울러 항변의 제출시기에 관해서 UNCITRAL 모델중재법 제8조 제1항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보다 늦지 않게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럽협약 제6조 제1항에서도 변론이 항변 이전 또는 동시라고 규정하고 있고, 독일의 학설도 항변은 변론 전에 주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⁴²⁾. 또한 한국 중재법에서도 항변은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³⁾

3) 재산 보전처분의 효력

중재판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 중재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압류나 가압류 같은 중재계약의 대상이 된 분쟁물에 관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모아 진다. 이에 대해 뉴욕협약은 이에 관해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보전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보전처분을 구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

38) Domke, op.cit., pp.168-171.)

39) 박상조, 주기종, 윤종진 공저, 국제상사중재론, 한울출판사, 1997, p.63.

40)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연방중재법 제3조, 영국중재법 제9조, 프랑스민사소송법 제1458조, 독일민사소송법 제1032조 등이 있고, 국제협약으로는 제네바의정서 제4조, 뉴욕협약 제2조3항, 유럽협약 제6조, 모델법안 제8조제1항 등이 있다(김명업, “중재계약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학회지 제11권, 한국중재학회, 2001, p.134.)

41) 독일 민사소송법 제1027조 a항, 유엔협약 제2조 제3항 등을 참조.

42) 독일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3항 제296조 제3항 등을 인용하고 있다.

43) 한국 중재법 제9조 제2항.

다.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의 결정은 중재계약에서 당사자의 합의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⁴⁴⁾

우리나라에서는 중재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⁴⁵⁾ 중재의 최종판결과 관계없이 “중재의 대상 재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중재법에서 이를 규정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할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그 실효성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는 중재계약의 대상이 된 분쟁물에 대하여도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중재계약 존재의 항변을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로 가압류, 가처분된 분쟁물에 관하여 재소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중재계약 존재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면⁴⁶⁾ 그에 관한 본안은 중재판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⁴⁷⁾

4) 최종해결의 효력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중재규정에서 밝히고 있다.⁴⁸⁾ 여기서 확정판결이란 판결이 상급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결을 말하며 이러한 확정판결의 취소불가능성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다만 판결은 당사자에게 허용되어 있는 상소제기의 적기에 지났거나 또는 그 기간외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없을 때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이 다하여졌을 때 확정되는 것이다.⁴⁹⁾

요컨대, 중재판정은 사실관계의 내용을 확인하여 확실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중재인은 판단불능, 불가판정, 미결상태의 보류결정 등의 중재판정은 효력은 없다. 나아가 중재판정은 분쟁물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종결판정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다른 사항들은 당사자간 구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판력으로 중재판정의 종국성으로 이를 다시 다룰 수 없는 원칙이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최종해결의 효력이라고 한다.⁵⁰⁾

5) 외국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효력

중재계약에서 해당 중재재판소에 내린 중재판정이 국제적 승인과 집행에 있어 국제적

44)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1999, p.389.

45) 한국 중재법 제10조.

46) 小山 昇, 앞의 논문, 64面.

47) 이병용, 앞의 논문, pp.277-278.

48) 한국 중재법 제15조.

49) 한국 민사소송법 제471조.

50) 김명엽, 앞의 논문, p.137.

인정을 받아야 중재판정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1958년「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일명 뉴욕협약이라 함)이 제정되어 우리나라는 1973년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는 적어도 협약체약국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⁵¹⁾. 즉, 본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국내에서 내려지는 외국중재판정은 협약체약의 일원인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고,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중재판결도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승인을 위하여서는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⁵²⁾

따라서 중재계약에서 내린 중재판정은 사인의 판정에 공권적 실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⁵³⁾

IV. 결 론

중재계약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법상 분쟁을 중재에 부탁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그러므로 중재계약은 일정한 유형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중재유형으로 사후 중재합의인 중재부탁계약과 사전 중재합의인 중재조항 형태가 있고 중재조항 유형은 다양한 계약관계의 조항 중에 당사자들의 합의한 내용으로 나타나면서 분쟁해결의 기본적 규칙에 속한다.

또한 중재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서신이나 전보에 의하여 서명된 서신이나 서명되지 않은 서신도 가능하여 중재합의는 서면주의 원칙을 명문화 하여 그 유효성과 적법성이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중재계약에서 분쟁은 당사자간 발생한 것으로 사법상의 법률관계이고 현존하는 분쟁이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포함하여 특정한 분쟁이어야 한다.

이어, 중재성립요건으로 당사간의 의사표시 합의와 이에 행위능력이 갖추어 져야 하고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어야 중재계약이 성립되고 나아가 본 계약은 효력요건을 갖추어 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중재계약에서 효력 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시점에서 효

51) 뉴욕협약 제1조 내지 제3조 참조.

52)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관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법률 또는 조건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

②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 한 일

③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한 일

④ 상호의 보장이 있는 일(김성수, 앞의 책, p.79.)

53) 사법연수원, 「국제상사중재」, 1999, p.40.

력이 발생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증재요청서가 도달된 일자에 증재절차개시가 시작된다고 본다. 또한 증재합의의 존속기간도 당사자간 합의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효력이 존속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증재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존속기간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증재계약의 효력이 소멸되고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증재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증재합의의 문언에 따라 정해지는데 먼저, 인적인 범위에서는 당연히 계약 당사자는 물론이고 계약당사자가 사망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증재계약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본다. 또한 대리인에게 의해서 체결된 증재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되고 제3자의 권리의무가 증재계약의 분쟁물 존부에 걸려 있을 경우 예컨대 보증인, 연대책무자에게는 증재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어, 물적인 범위는 당연히 증재계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데 증재조항에서 명시된 개개인 거래 즉, 기본계약 자체와 주된 계약이 해제되어 청산 될 때까지 발생한 분쟁도 증재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되는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요컨대, 증재계약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간의 분쟁을 증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으나 최소한 개괄적으로라도 주계약에 부수하여 증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한 당사자간의 의사는 상대방과의 주계약 체결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증재로 해결한다는 취지인 만큼 증재계약의 효력범위가 포괄적,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각국의 판례 및 학설의 추세라는 것이다.

증재합의도 일종의 계약인 것이므로, 그 효력의 내용에 관해서는 증재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일반을 규제하는 법 즉, 민법, 상법, 국제사법 등의 해당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준용함으로써 이를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증재계약의 효력 내용에는 당사자가 증재계약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인정된다.

증재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내용으로는 증재계약이 소송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않고 법원이 분쟁을 증재절차에 회부하도록 하는 직소금지 효력이 있고, 당사자들은 증재계약의 존재를 알면서도 항변을 주장하지 않는 변론은 항소권이 소멸되는 방소항변의 효력이 있는데, 이는 증재계약이 있다는 항변을 하는 것이 방소의 항변이고 이에 관한 증재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 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증재신청인은 증재절차에 따라 증재판정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분쟁물에 대한 법원에 재산 보전처분 조치를 할 수 있는 효력이 증재계약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증재계약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최종해결의 효력을 지니는 동시에 이 효력은 특히 외국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해서는 뉴욕협약에 따라 증재판정이 국내외 승인 및 집행이 인정되는 효력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재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로써 중재계약의 효력은 우선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에 이르게 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과 다른 한편으로 중재합의의 존재는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본안을 판단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권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되는 효력 등이 있다. 이러한 중재제도의 특유성이 좀 더 광범위 하게 다양한 국제거래에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 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이수, 박종삼,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2004.
- 강이수, 박종삼, 「국제통상론」, 삼영사, 2007.
-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 해의」, 대한상사중재원, 1991.
- 고재경·서정일, 「상사중재론」, 동성사, 1990.
- 곽영실, “중재계약체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경영법무,”1998.
- 곽영실, “중재계약의 범위와 준거법의 충돌문제, 경영법무,”1998.
- 김성수,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제도 해설」, 대한상사중재원, 1994.
- 김명엽, “중재계약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학회지 제11권, 한국중재학회, 2001.
- 김인·박정기·김인유, 「국제사법」, 법문사, 2003.
- 김연호, “중재계약의 효력 범위”,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2002.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 목영준,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 2007,
- 박상조·주종기·윤종진, 「국제상사중재법론」, 한울출판사, 1997
- 박종삼, 김영락, “중재계약에 관한 판례분석”,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9.
- 박종삼 외, 「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4.
- 사법연수원, 「국제상사중재」, 1999.
- 서정일, “건설중재에 있어서 선택적 중재합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2.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박영사, 2002.
- 손경한, “중재계약에 관한 일반적 고찰”,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1.
- 이강빈,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5권제2호, 2005.

-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1999.
- 이순우, 「상사중재론」, 법경사, 1998.
- 이순우, “중재계약의 소고”,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2003.
- 이순우,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병용, “중재계약과 관련하여”,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1.
- 정동운, “중재계약의 항변”,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2002.
- 장문철 외,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수용론, 세창출판사, 1999.
- 장영환,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분석”,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09.10.
- 최창호, 「상사분쟁관리론」, 도서출판 두남, 2003.
- 松浦 聲, 青山善允 編, 「現代仲裁法の論点」, 1998.
- 小山 昇, 「仲裁法」, 有悲角, 1983.
- 倉田寬吉, 「仲裁手續の解説」, 1983.
- Alan Redfern & Martim Hunter,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 London:Sweet & Maxwell, 1991.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Dispute Resolution Journal, 2003.
- Anthony Alton, Rissel on the Law of Arbitration, Stevens and Sons Ltd, 1970.
- Bennett, Steven C., Arbitration : Essential Concepts, ALM Publishing, 2002.
- Domke, Martin, 「Commercial Arbitration」, Gabriel M. Wilner, 1984,
- Hausmann, Rainer,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Verlag Dr.Otto Schmidt KG, 1988.
- Holtzmanm, Howard M., & Josep E. Neuhauser, A Guide to the UNCITRAL Model Law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Legislative History and Commentary, Kluwer Law and Taxation, 1989.
- Redfern Alan & Hunter Martin,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ondon Sweet & Maxwell, 1991.
- Russell, F., 「The Law of Arbitration」, Anthony Walton , 1979
- Schmitthoff, Clive M., Schmitthoff's Export Trade :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0.
- UNCITRAL/WTO International Trade Centre,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001.

*그외, 제반 각국, 국제기구 법·규정 및 인터넷 사이트 참조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Jong-Sam Park

That occur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without resorting to a court trial on the basis of principle of government by the parties to resolve the dispute resolution in general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ADR) agreed to, reconciliation, coordination, mediation and other methods are. Here, unlike arbitration and other dispute resolution arbitrator, the court confirmed the arbitration award came from the judge and the same shall become effective in doing international commerce dispute resolution methods are widely used.

Arbitration Agreement is a contractual dispute, regardless of whether a certain law there aris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Currently exists, future conflicts can arise in whole or in part by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o be resolved.

Arbitration agreement include: the effects of out of contract arbitration proceedings, the court does not want the progress of the dispute referred to arbitration proceedings to the effect, and the presence of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does not claim to knowing the defense plea that Appeals ticket of destruction that have the effect of demurrer,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are rebuttal to the rebuttal of prozesshindernde Einrede and the mediation of a plea on the merits when the first defense must be submitted to the arbitration proceedings in which the applicant until the arbitration award determined that the property dispute to court for water conservation measures to dispose of the watch was in effect for arbitration in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court sentenced the same kinds of effects that resolved the final effect, especially at the same time the effect of foreig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decision regarding the New York Convention arbitration award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ffects are being recognized. Consequently, the arbitration agreement to take effect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exists is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staying.

Therefore, agreements between individual university entrance exams based on the company signed a contract regarding the effect of arbitration first, associated with individual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the leading research and analysis, review, and examine the general concep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fter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focuses on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f study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is aimed at the individual university entrance exams.

Key Words : ADR, arbitration, arbitration agreement